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에 대한 최근 논의

장동식 수석연구원

요약

- 유럽의회는 Solvency II 지침에 대한 개정 의견을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였다. 유럽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감독기준의 재도입, 완전이행일 2014년 1월 1일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유럽의회 개정 의견은 유럽 감독당국의 일관성 유지, 중소형사 및 감독당국의 Solvency II 전환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을 토대로 Solvency II 지침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함.

- 유럽위원회는 2011년 1월 EU 금융감독체계 개편 중 보험관련 사항, 개정 사항 등을 Solvency II 지침에 반영하는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을 공표함.¹⁾
- 유럽이사회는 2011년 9월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의 제7차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제6차 수정안(2011년 7월)과 유럽의회 보고서(2011년 7월)를 토대로 함.²⁾
 - 유럽의회 보고서는 경제통화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가 작성하였는데, 이는 유럽이사회의 제2차 수정안(2011년 4월)을 토대로 함.

1) 옴니버스 I 지침은 2010년 12월 공표되었는데, 이는 EU 금융감독체계 개편 중 은행 및 증권·시장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1개 지침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2006/48/EC 및 2006/49/EC), 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2002/87/EC),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s Directive(2003/41/EC), Market Abuse Directive(2003/6/EC),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2004/39/EC), Prospectus Directive(2003/71/EC), Settlement Finality Directive(1998/26/EC), Transparency Directive (2004/109/EC), Anti Money-Laundering Directive(2005/60/EC) 및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2009/65/EC)

2) Milliman의 "Seventh Presidency Compromise Text for the Omnibus II Directive"(Solvency II Update, 2011년 9월) 참조함.

- 유럽의회는 2011년 12월 또는 2012년 1월 옴니버스 II 지침에 대한 최종 제정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³⁾
 - 유럽이사회는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기서는 유럽의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유럽의회 보고서는 유럽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의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은 EU 보험감독기구(EIOPA)와 Solvency II 지침과의 정합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은 Solvency II 지침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Solvency II 지침의 완전이행 시기 등의 개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먼저 유럽의회 보고서는 감독기준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EIOPA와 Solvency II 지침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둔 것임.

- EIOPA는 감독보고, 자산·부채 평가, 책임준비금 계상, 비유동성 프리미엄 계상, 자기자본 평가 등에 대한 감독기준안(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을 유럽위원회에 2012년 3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⁴⁾
- 또한 EIOPA는 절차 및 형식·서식에 대한 이행감독기준(draft 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을 2012년 6월 1일 또는 2012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⁵⁾

■ 유럽의회 보고서는 Solvency II 지침 이행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음.

- 2014년 1월 1일을 Solvency II 지침에 대한 완전이행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들은 기존 Solvency I 지침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음.

3) 옴니버스 II 지침에 대한 최종 제정안은 유럽위원회의 제정안, 유럽이사회의 수정안, 유럽의회의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4) EIOPA는 유럽보험감독기구 규정(ESA Regulation)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90조 및 제291조에 해당되는 감독기준안 및 이행감독기준안을 유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유럽위원회는 3개월 내에 접수된 기준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5) EIOPA는 자기자본의 승인, 보험회사의 경험치 승인, 내부모형 승인, 자본확충, SFCR(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상관계수 수정절차 등에 대한 이행감독기준을 2012년 6월 1일까지 제출하고, 감독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EU 회원국에서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 등에 대한 이행감독기준은 2012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다만 Solvency II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2013년 7월 1일 Solvency II 지침에 따른 자기자본(예: SCR, MCR 등)을 계상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이러한 유럽의회의 제안은 중소형사 및 감독당국이 Solvency II 지침으로 용이하게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유럽의회 보고서는 유럽 회원국의 감독당국이 2013년 1월 1일부터 자기자본의 분류, 내부모형 등의 승인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 유럽의 보험회사가 2014년 1월 1일부터 Solvency II 지침을 완전이행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의 분류, 내부모형 등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한 기본 자기자본은 후순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1종 자본(Tier 1)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한편 보고서는 보험감독당국이 감독요구자본(SCR)의 보유, 보고요건의 충족에 필요한 시스템 및 구조의 보유 등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경과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 그렇지만 유럽위원회의 옴니버스 II 지침 제정안은 보험감독당국이 지배구조 요건, 책임준비금 계상, 감독요구자본 계상 등에 대하여 최대경과기간(예: 3년, 5년, 10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 [kiri](#)